

시 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455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결재일자	2016.2.24.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46호	협 조	자치행정과장			



##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확대 추진계획

2016. 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 고
시 민 참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li> </ul>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 문 자 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li> </ul>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li> </ul>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 회 적 배 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li> </ul>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 거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li> </ul>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안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li> </ul>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타 기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li> </ul>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홍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li> </ul>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바 른 우 리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li> </ul>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확대 추진계획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24개 자치구로 확대·시행하여 불법현수막을 정비코자 함.

## I 추진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의2제3항
  - 시장은 자치구 광고물 등의 전반적인 수준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8조제2항
  - 구청장은 불법 유동광고물 제거·수거한 자에게 비용지급
  - 시장은 구청장에게 예산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 시장 요청사항

- ① 보상액 제한 완화 등을 통한 불법현수막 근본적 해결('15.12.27)
- ② 슈퍼데스크 논의시 수거보상 확대 시행 지시('16.1.28)

### < 그간 추진경위 >

- '15.10.19 :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추진계획 수립(2부시장 방침 제350호)
- '15.10.21~29 : 서울시·14개 자치구 협약서 체결
- '15.11.27 :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교육시행(수거보상 참여자)
- '15.12.01 : 자치구 구청장 협의회 수거보상제 적극 참여 요청
- '15.12.03 : 수거보상제 캠페인 실시(광화문 광장 및 역사 출입구)
- '15.12.14~18 : 수거보상제 시행 자치구 점검 및 운영실태 파악
- '15.12.23 : 시장실 수거보상제 추진사항 보고
- '16.01.07 :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 협의(24개구 참여)
- '16.01.19 : 수거보상제 점검결과 보고(행정 2부시장)
- '16.02.03 : 수거보상제 추진실적 보고(행정 1부시장)

## Ⅱ '15년 추진성과와 과제

### 추진성과

- (시민참여)** 지역주민이 불법현수막을 정비하는 관리토대 마련
  - 전국 최초, 지역주민 참여형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시행
  - 단속이 어려운 주말이나 휴일에 집중정비하여 단속효과 극대화
    - 종로구 등 14개 자치구 434명 참여

(단위: 매 / 천원)

합 계		일반현수막		족자현수막		행정현수막	
매수	보상금	매수	보상금	매수	보상금	매수	보상금
122,732	180,857	57,343	114,659	64,315	64,080	1,074	2,118

※ 자치구 수거보상 추진실적 현황(붙임1)

- (고용창출)** 중·장년층의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창출 효과 기여
  - 수거보상제 참여시민 434명 중 50대~60대가 60% 차지

### 추진과제

- (형평성 논란)** 정당·행정현수막 미정비로 민간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발생, 단속효과 반감
  - 20대 총선('16.4.13)으로 정당 등의 불법현수막 증가 예상
    - 자치구는 정당 등의 이해관계 등으로 정비기피 현상발생
  - 민간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로 정비 단속의 효과 반감
    - 시에서 수거보상원에 대한 일괄 교육 등 시행

- **(정비의지)** 수거한 불법현수막 과태료 미부과 등 정비의지 부족
  - 일부 자치구(중구·서초구)에서 정비구역 시행으로 수거보상 실적 저조
  - 수거보상제로 수거한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미처분
    - 업무증가 등의 사유로 과태료 미처분
- **(참여의지)** 미시행 자치구 존재
  - 수거보상시행 자치구와 미시행 자치구로 인한 단속효과 퇴색
  - 25개 자치구 수거보상제 참여 확대 필요

### Ⅲ **추진 방향**

- **(소통·협약)** 시(市)와 자치구간 ‘소통과 협약’ 강화
  - 자치구공무원과 수거보상원에 대한 협의 및 정기적 교육실시(년 2회)
    - ⇒ 서울시 주관 교육이수자에 한하여 수거보상원으로 최종선정
- **(효율성제고)** 정당·행정, 민간현수막 등 효율적 정비 추진
  - 수거보상제로 수거한 전체 현수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 ⇒ 수거보상제의 단속실적, 실적대비 과태료 부과비율 등을 「LED간판 인센티브사업」의 평가항목에 추가하여 시행
- **(기동정비반 운영)** 위법 광고물에 대한 시와 자치구와 합동점검
  - 위법한 광고물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구와 합동으로 점검실시 가능((법10조 제7항~제9항, `16.1.6 공포, `16.7.7 시행)
    - ⇒ 자치구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시(市)가 직접조치 가능
  - 서울시 기동정비반 운영 : `16. 7. 7. 이후

## IV '16년 수거보상제 세부 추진계획

- 사업기간 : '16년 3월 ~ 12월
- 사업대상 : 불법 현수막(일반·족자형)
- 소요예산 : 1,080백만원(특별교부금)
  - 산출내역 : 45,000천원×24개구 = 1,080,000천원(산출근거-붙임2)
- 대상자치구 : 24개 자치구(강남구 미참여)
  - ※ 강남구는 유동옥외광고물 정비용역 시행 중
- 추진방식 : 수거보상비 예산지원(시 → 자치구)
  - 지원방식 : 동의한 24개 자치구에 한하여 교부금 교부(교부(안)-붙임3)
  - 상반기 60%지급, 하반기에는 상반기 추진실적에 따라 차등 교부
- 정비방법
  - 수거방법 및 안전교육 실시 후 시행(자치구별 교육)
  - 평일·주말·공휴일·야간 등 상시 단속 실시
  - 수거보상원은 구청장명의 단속증 지참
- 수거보상금 지급 등 대장관리
  - 수거보상금 지급 신청서(증빙서 첨부)에 의해 확인 후 지급(양식-붙임4)
  - 참여자별 수거 및 과태료 부과현황 관리대장 작성(양식-붙임5)
- 업무협약 체결
  - 수거보상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협력(협약서-붙임6)

□ 주체별 시행방안

**서울시** 참여자격, 보상기준 등 통일기준 수립·시행

○ 참여자격

- 2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구성 동별 1~2명 선정
- 옥외 광고물 협회 자치구 지부(20명 이내)
  - ※ 안전사고를 대비 일괄 보험 가입

○ 보상기준

- 1인/월 3백만원 이내 (족자형 1,000원, 일반형 2,000원)

○ 지도 실태점검 및 실적관리

- 서울시 광고물 팀 자치구 정비 추진상황 불시 현장 점검
  - 평일·주말(휴일), 주·야간 점검
  - 적출된 불법광고물은 정비 및 행정처분 확인
  - 적출된 불법현수막 자치구별 실적 평가 등 관리
- 서울시 특별점검반 편성 : 도시빛정책과장 등 19명

점검반	1조	2조	3조	비고
총괄반장 (도시빛 정책과장)	박경애(조장) 장명호(성동,광진) 전미란(용산) 김홍석(동대문,중랑) 정삼모(노원,도봉) 이지영(구로구)	김대권(조장) 김호곤(성북,강북) 박경여(종로,중구) 박진화(은평,서대문) 김용갑(마포,양천) 임태복(강서구)	김수경(조장) 신우철(금천,영등포) 황태익(동작,관악) 이원준(서초,송파) 황종욱(강동구)	순찰차 1대 운영 (권진목)

## 자 치 구 | 서울시 기준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수립 추진

- 모집방법 : 참여자 공모 및 비용 지급
- 업무권한 : 단속원 위촉, 구청장명의 단속원증 수여(단속원증-붙임7)
- 정비·수행방법
  - 수거보상참여자 공개모집
  - `15년 서울시 수거보상제 실적우수자(교육이수자) 우선 선정
  - 교육 및 권한 부여(구청장명의 감시원증 등)
  - 수거보상 예정자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 정비대상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정비 전·후 사진 첨부)
  - 자체 정비계획 수립 시행, 매주 불법현수막 정비실적 시(市)에 제출
  - 불법현수막 단속부서 중심으로 주·야간 합동단속반 편성·운영
  - 평일·토·일요일, 공휴일 야간 집중 점검 및 단속 시행
- 자치구 불법 현수막 정비실적 제출(붙임 8)
  - 수거실적 및 보상금 지급 현황

(단위:원)

합 계		수거실적 및 보상금 지급 현황			
		(일반/족자)현수막		행정현수막	
매수	보상금 지급	매수	보상금 지급	매수	보상금 지급
		/	/		



## V 행정 사항

- 수거보상제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요청('16. 2월중)
  - 서울시 자치행정과 협조 의뢰(시)
  - 자치구 예산 재배정시 불법현수막 외에 예산집행 제한(자치구)
-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업무협약 체결('16. 2월중)
  - 서울시·10개 자치구(추가참여)와 협약서 체결
- 특별교부금 교부('16. 3월중)
  - 서울시 자치행정과 → 24개 자치구
    - 상반기 : 60% 집행
    - 하반기 : 40% 집행(상반기 추진실적에 따라 자치구별 차등 교부)
- 자치구 세부 시행계획 수립('16. 2월 ~ 3월중)
  - 수거보상 참여자 공모, 수거방법 및 안전교육 등(자치구)
  - 세부시행계획 사본 및 수거보상명단 시에 제출(자치구)
  - 교육이수자에 대한 최종선정 명단 통보(시 → 자치구)
- 불법 현수막 정비실적 등 제출('16. 4월 ~)
  - 수거실적·보상금 지급 및 참여자별 수거현황, 과태료 부과현황 제출 (자치구)
  - 행정처분 실적 현황 제출(자치구)

- 붙임 1. 자치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정비실적 1부.  
2. 수거보상제 산출근거 1부.  
3. 특별교부금 교부(안) 1부.  
4. 수거보상금 지급신청서 1부.  
5. 수거보상제 불법현수막 수거장부 1부.  
6. 업무협약서 1부.  
7. 수거보상제 단속원증 1부.  
8. 자치구 불법현수막 정비실적 제출(서식) 1부.